

1979년 4월 21일
건설부령제221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979. 8. 22 건설부령제 235호
개정 1980. 6. 2 건설부령제 265호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재개발사업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립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주택, 외국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국방 기타 국가의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대지와 아파트 지구안에 있는 대지로서 건설부장관이 주변환경이나 도시미관상 주택의 대지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독주택의 대지 : 8미터
2. 연립주택의 대지 : 10미터
3. 아파트의 대지 : 50미터

제 3조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120미터 이하이요 당해 건축물의 전면 또는 후면에 있는 공동주택까지의 거리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80. 6. 2 삭제)

제 4조 (시설등의 제한) ① 공동주택에는 건축설비·대피시설·주차시설·주택관리업무시설·체육시설 및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소 이외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의 공동주택에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중 상가 또는 슈퍼마켓과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0. 6. 2 개정)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피시설 및 체육시설

은 지하층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0. 6. 2 신설)

③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관리업무용의 시설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지의 조건과 토지 이용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거시설의 주거편익에 직접 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조 (단위평면계획) ① 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상 단위평면계획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② 전용면적 11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는 세대당 또는 호당 2실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조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의 복도 및 계단(비상 계단은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7조 (벽체등의 구조) 공동주택의 인접세대와의 사이 벽은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이중벽으로 하거나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차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음구조로 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제 8조 (난간의 구조) 장독대 또는 가사용품의 저장소로 사용할 발코니의 난간은 높이 1.1미터 이상이고 장독대 등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 9조 (진개수거 시설) ①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다스트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식인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2세대당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식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3세대당 1개소 이상으로 하되, 각세대의 현관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위치에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스트슈트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다스트슈트의 상단부에는 동력·태양열에너지 또는 풍력으로 작동하는 악취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조 (창·문 및 낙수구의 규격등) 주택의 창 및 문과 평지붕에 설치하는 낙수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 및 문에 대하여 특수공법에 의한 구조로서 건설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 제11조 (마감재료) ①주택의 각부위별 마감재료는 별표
 ②다음 각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사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 1
 3. 조립식공법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공법으로 건축하는 주택

제12조 (열량측정계기등의 설치)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세대마다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하거나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존공동주택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도록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동일 보일러시설을 이용하도록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모두60m² 이하인 공동주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4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도로등) (80. 6. 2개정)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폭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80. 6. 2 개정)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규모	도로의 폭(미터)
300세대 미만	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12
1,000세대 이상	18

②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도로의 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도로의 폭은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6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0. 6. 2개정)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	도로의 폭(미터)
100세대 미만	4
10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	6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	8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12
1,000세대 이상	18

③도로와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이

- 어야 하며,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도로의막다른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폭12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면은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80. 6. 2)
 ⑤진입도로 및 주된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⑥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의 주현관입구까지의 도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하수도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수도계량기와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엌 욕실 및 세탁장등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80. 6. 2개정)
 ②(80. 6. 2삭제)

제16조 (통신시설) ①시의 행정구역안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의 행정구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안의 주민이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공중전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교환시설을 하거나 공중전화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통신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3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초과하는 500세대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제17조 (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 또는 엘파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마다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취사·난방겸용의 연탄아궁이식으로 건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동차정류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에 버스 또는 택시의 통과 교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버스 또는 택시의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우편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500

세대 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이용이 편리한 위치한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안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도로의 양측에는 서로 엇갈리게 하여 길이50미터 이내마다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0. 6. 2개정)

제21조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30평방미터이상, 500세대를 초과하는 500세대 이내마다 1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65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유치원·탁아소)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확보된 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안에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공공시설) 3,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 및 우체국을 건축할 대지를 각각150평방미터 이상씩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24조 (어린이 놀이터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그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평방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3세대 이내마다 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인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어린이놀이터는 1개소의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고, 폭이 9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거실이 있는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놀이터의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의료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판매용 건축물의 건축 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

소 이상

2.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1개소 이상,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공중목욕탕)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000세대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공중목욕탕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체육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65평방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300세대 이내마다 10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인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학교 및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정구장(2면이상의 것을 말한다)·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의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운동장에 정구장·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집회소) ① 아파트에는 1동의 세대수가 3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평방미터이상, 3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평방미터에 30세대를 초과하는 10세대 이내마다 5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인 동별 집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동의 지하층이 동별 집회소 기준면적 이상이고, 그 지하층에 집회소의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집회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50평방미터에 1,000세대를 초과하는 1,000세대 이내마다 15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인 공동집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동의 지하층이 공동집회소 기준면적 이상이고 그 지하층에 집회소의 시설을 하는 경우와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공동집회소 기준면적이상인 새마을회관·강당 기타 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공동집회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비상저수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세대당 1톤(비상저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톤)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녹지시설등)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공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녹지시설을 하여야하며,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안에 휴게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1,0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1,0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세대를 초과하는 1,000세대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휴게소에는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에 잔디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단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단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텔레비전 공청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전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공동저탄장)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로 구획된 공동 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 면적안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노인정)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 이내마다 10평방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3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5평방미터 이상의 오락실
2. 장기 및 바둑등의 오락시설
3. 남·여용 각 1개소 이상의 변소 및 세면시설
4. 1개소 이상의 급수시설

제34조 (판매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상가 및 슈퍼마켓등의 판매시설을 당해 주택준공시까지 건설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0. 6. 2 단서신설)

② 제 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료품·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이미용원·약국및 기타의원등을 주된 용도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개업·주점 및 유흥음식점의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규칙은 197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 제 2항을 삭제한다.
 2. 제19조중 제 3항 내지 제 8항을 각각 제 4항을 내지 제 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 2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할 주택건설사업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별표 1]의 본표를 삭제하고, [부표 1]을 [별표 1]로 한다.
4. [별표 4]의 복리시설중 “오물 및 진개의 수거시설”란을 삭제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 제 1항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 시행당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단 위 평 면 계 획 기 준

실 명	기 준
거실 (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80. 6. 2삭제) 2. 최소폭은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침 실	1. 1실의 면적은 5.7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80. 6. 2개정) 2.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욕	1실의 면적은 4.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80. 6. 2 단서삭제)
욕 실 (변소겸용)	1실의 면적은 3.2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 의한 유니트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 소	(80. 6. 2삭제)
현 관	폭은 1.4미터 이상으로 한다.
발 코 니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	유효폭은 1.1미터 이상으로 한다.
창 고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실 또는 1개소의 면적은 3.0평방미터 미만으로 한다.
기 타	설계도에 따른다.

[별표 2]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구 분	기 준
계단의 유효폭	1.2미터 이상
계단의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계단의 단높이	18센티미터 이하
계단참의 유효폭	1.3미터 이상이고 계단의 유효폭 이상
복도의 유효폭	1.4미터 이상

[별표 3]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등의 기준

구 분	마감규격(밀리미터)		마 감 등
	폭	길이 높이	
5층이하의	500	600	내부면은 진개가

슈 트	주 택	이 상 이 상	걸리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층이하의	600	
저 장 소	주 택	이 상 이 상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 및 청소용급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5층이하의	1,400	
	6층이하의	1,400	3,000 1,200
진 개 투 입 구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 의하거나 기타의 공법으로 악취가 주거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 4]

내 부 마 감 재 료

다음 표의 재료중에서 선택한다.

다만, 품질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식별	부 위	마 감 재 료
현 관	천 정	난연성보드류(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의무화된 경우에 한함) 합판 또는 평스트레트위 벽지바름 모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거실의 천정과 연속된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거실과의 사이에 칸막이 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위 페인트칠
거 실	바 닷	바닥용 타일 붙이기 인조석 현장갈기 아스타일 붙이기
	천 정	난연성 보드류 합판 또는 평스트레트 위 벽지바름 모르터위 페인트 또는 벽지 바름
	벽 체	모르터위 벽지바름 모르터위 페인트칠
실	걸레받이	목재널판 합성수지
	바 닷	무늬목 후로링보드

		아스타일류 붙이기 모르터 마감(준공후 입주자 부담으로 비닐제품 또는 카펫트 깔기)
침실	천 정	합판 또는 평스레트위 천정지 바름 모르터위 천정지바름
	벽 체	모르터위 벽지바름
	걸레받이	목재널판(입식침실에 한함) 굽도리 돌림
	바 닥	모르터위 장판지 모르터 마감(준공후 입주자 부담으로 비닐제품 또는 카펫트 깔기)
부엌	천 정	평스레트위 페인트칠 모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겸용인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벽 체	징두리벽 : 벽타일 붙이기 모르터위 페인트칠 벽타일 붙이기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겸용인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걸레받이	식당부분은 거실에 준함.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아스타일류 붙이기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겸용인 경우 식당부분은 거실에 준할 수 있다.
욕실 및 변소	천 정	평스레트(알미늄 고정못을 사용하고 출눈조이너 시공한다.) 위 페인트칠 선라이트
	벽 체	벽타일 붙이기 모르터위 페인트칠(징두리벽을 제외함)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계단실 및 복도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칠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칠
	걸레받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위 페인트칠
	디딤판	인조석 현장갈기 모르터 마감
다용도실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칠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칠
	걸레받이	모르터위 페인트칠 합성수지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인조석 현장갈기
발코니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칠 제물치장 콘크리트 페인트칠
	걸레받이	모르터위 페인트칠
	바 닥	인조석 현장갈기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 *주) 1. 천정 및 벽체(걸레받이를 포함한다.)의 모르터는 석고프라스타로 갈음할 수 있다.
2. 욕실 및 변소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 의하여 유니트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종류	설치기준
그네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조(높이 2미터이상인 3인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이내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이상.
미끄럼대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높이 2미터 이상, 상계판의 넓이 2평방미터 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 이상, 활주면 2개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이상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의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이상.
철봉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조(대, 중 및 소형의 철봉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이상)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 100세대를초과하는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 이상.
모래판	○그네, 미끄럼대 및 철봉의 주변에는 두께 0.3미터 이상
시소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 3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산정한 조수 이상
공중변소	○어린이놀이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수세식 공중변소(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기 1개이상을 갖춘것) 1개이상
음수기 긴의자	○ 1개소의 놀이터마다 음수기 1개이상 ○ 1개소의 놀이터마다 5인용 긴의자 6개이상

[별표 6]

판매시설의 설치기준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	판매시설 의 종류	판매장건축물의 규모등	시설기준
100세대이 상 1,000세	상 가	세대당 2평방미터이 상 4평방미터 이하	시장법의 규정에 의

대미만		로서 5층이하. 다만, 판매장 이외의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예외로한다.	한다.
1,000세대 이상 5,000 세대미만	종합상가 (슈퍼마 켓또는백 화점)	연면적 2,000평방미 터이상 8,000평방미 이하로서 5층이하	시장법의 규정에의 한다.
5,000세대 이 상	소매시장	연면적 3,000평방미 터 이상 15,000평방 미터 이하로서 5층 이하의 소매시장. 다 만, 연면적 5,000평 방미터 이하의 상가 또는 종합상가를 설 치할수 있다.	